



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



☞ 지원요건

-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

구 분		지원기준율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(35~36) 출판, 영상,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(58~63) 금융 및 보험업(64~66)		1%
건설업(41~42) 숙박 및 음식점업(55~56)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(70~73) 예술,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(90~91) 협회 및 단체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(94~96)		4%
농업, 임업 및 어업(01~03) 운수업(49~52)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생산활동(97~98)		6%
광업(05~08) 하수·폐기물처리·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(37~39)		7%
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(74~75)	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(74100),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(75310)	12%
	건축물일반청소업(74211) 소독,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(74220) 탐정 및 조사서비스업(75330)	23%
기타 업종		7%
국제 및 외국기관(99)		12%
부동산업 및 임대업(68~69)		23%
그 밖의 업종		2%

☞ 지원 수준 및 기간

- 지원기준율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(대규모 기업 10%) 한도. 다만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율 산정 시 제외

☞ 지급절차 :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